

임갑인 변호사에게 듣는다

- 한국 공증제도의 현재와 미래 -

□ 대담자 : 최중현 대한공증협회 부협회장 □ 일시 : 2007년 11월 30일 □ 장소 : 법무법인대중

※편집자 주 : 「대한공증협회지」 창간을 기념하여 대한공증협회 협회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신 법무법인대중의 임갑인 변호사님으로부터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보는 특별대담을 마련하였습니다.

▣ 임갑인 변호사 약력(1923. 1. 3.)

1942. 9. 일본 명치대학 전문부 법과 졸업
1943. 7. 일본고등시험 사법과 합격
1952. 9. 변호사 개업
1960. 7. ~ 1960. 9. 중앙선거위원
1960. 9. ~ 1961. 6.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1976. 4. ~ 1977. 3. 서울제일변호사회 회장
1986. 3. ~ 2001. 11. 한일변호사협의회 회장
1993. 7. ~ 1997. 6. 대한공증협회 회장
1997. 7. ~ 2002. 6. 대한공증협회 운영위원장
1988. 5.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2000. 9. 명덕상 수상(서울지방변호사회)
2007. 9. 율곡인권상 수상



Q 최근 변호사님의 건강과 근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구활동은 많이 하고 계신지요?

A 건강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 항상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현재 특별히 법률 관련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증업무에 진력하기 위하여 공증직역 확대 방안이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Q 공증업무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공증업무를 하시게 된 계기는?

A 원래 공증제도라는 것이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처리 등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경제성장에 따라 업무영역이 확충되고 이용도가 많아져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관을 지내셨던 양회경 변호사님의 권유로 1981년경 공증인가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면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2월에 법무법인대중을 설립하여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겸업 공증업무를 담당해 오게 된 것입니다.

Q 처음 공증업무를 하셨을 때 당시와 현재의 업무규모를 비교해 보신다면?

A 우리 나라에 공증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만 해도 공증은 소수의 임명공증인이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다 1961년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합동법률사무소와 그후 법무법인이 공증인가를 받아 변호사가 공증을 하는 겸업공증인제도가 생겨 전국적으로 공증업무를 하게 되고 공증수수료도 현저하게 저렴하게 되어 국민에게 편의를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증을 하던 80년대 초반 해도 임명공증인은 20여명,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67개소에서 200만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증인가법무법인까지 포함하여 전체 370여개소에서 공증담당 변호사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처리건수도 400만건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있어 공증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편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직역 확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국민의 편리와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실무를 하시면서 체험하시게 된 공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증의 활용도나 다양성도 많이 높아진 편인지요?

A 공증업무는 공정증서작성과 사서증서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인증 및 확정일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들도 과거에 비하여 공증의 필요성과 편의성을 인정하고 점차 이용도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의 경우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공증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유언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게 되면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특히 부동산은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편리성을 알게되면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대국민 공증의 홍보라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Q | 과거에 비해 현재 공증업무 현황은 어떠한지요?

A | 전체 공증사무소의 처리건수를 보더라도 공증업무 처리건수가 400만건에 이르는 등 매우 높아진 편이지만 근자에는 경제불황으로 거래가 적어져서인지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 등은 현저히 적어진 편입니다.

Q | 그렇다면 왜 공증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 | 각종 계약서, 어음·수표, 합의서, 유언, 초청장, 각서, 의사록, 원본대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거래에 공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민사 분쟁 및 범죄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며,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공증은 예방사법분야인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BBK사건을 보면 얼마나 공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에 공증을 받았다면 이러한 분규는 예방되었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불신사회일수록 더더욱 모든 거래문서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 |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 | 공증은 국가사무입니다. 공증인은 중요한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므로 공증관련 법규를 습득하여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민에게 신속·친절하게 봉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촉탁인에게 친절과 미소로서 응대하고, 공증에 관한 상담은 공증인이 직접 면담하여 분쟁예방과 채권보전 등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Q |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은 크게 임명공증인과 겸업공증인(또는 인가공증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A 임명공증인은 소수의 임명공증인이 각자 사무소를 개설하여 공증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겸업공증인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습니다. 겸업 공증담당자 수는 2000여 명이 되어 대부분의 공증사무를 처리하고 국민들의 이용도도 높으나 송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공증업무처리에 소홀한 점도 생길 수 있으므로, 공증업무담당자는 각별히 엄정한 공증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겸업공증제도는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들에게 민사분쟁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공증제도를 이용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고, 또한 공증촉탁을 함에 있어서 법률문제의 상담까지 필요한 것이 보통이어서 이를 겸업공증인들이 많은 부분 담당해 주어 국민들에게 공증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해 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Q 외국의 임명 공증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의 공증인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한국 제도의 특징 또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A 일본은 소수의 임명공증인(법원장 또는 검찰청 책임자를 임명)이 공증업무를 처리하여 공증인의 수입이 많으나 공증인사무소가 적고 공증수수료가 비싼 반면, 우리의 경우처럼 겸업공증인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무소가 있고 공증수수료도 저렴하여 국민에게 많은 편의를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겸업공증제도의 경우 변호사는 소송사건의 처리 등에 의한 별도의 수입이 있으므로 공증만을 위한 임명공증인들의 수수료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공증수수료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겸업 공증제도의 시행으로 종전 공증수수료의 1/3로 감경되는 수수료 인하가 되었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Q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 있어 공증업무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선서인증제도라든지 전자공증제도와 같은 선진제도 도입을 추진중인데요, 공증업무의 확대 필요성과 분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새로운 제도 도입과 별도로 현행 공증제도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며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 공증은 분쟁예방과 사건의 신속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므로 가급적 업무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 외에 그전부터 논의하여 온 특정물의 인도에 대한 공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법보좌관제도가 신설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업무과중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증제도가 잘 활용되면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할 사건의 발생이 감소되고, 발생한 사건을 사법

처리할 때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여, 법원과 검찰의 사무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사법분야인 공증의 직역을 과거부터 논의되어 오던 부동산원인등기증서나 합의이혼제도에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특정물 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등의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법무부가 최근 공증인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나이제한과 공증인가 유효기간이 규정되고 변호사법상의 공증인가 규정이 인가공증인 형태로 공증인법으로 통합되며, 협회 강제가입단체화가 추진중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개정사항들이 있는데요, 개정안에 대하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A 법무부에서는 지난번 겸업공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임명공증인제도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합동사무소 공증담당자 전원과 법무법인에 공증담당 변호사 2명 이상을 두게 하고, 이를 임명공증인과 같이 연령을 75세로 임기를 5년으로 규제하는 절충식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증인체계를 일원화하고 협회를 강제단체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령제한에 있어 법조인의 평균수명을 볼 때 75세로 규정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한공증협회의 협회장과 운영위원장직을 오래 역임하셨고, 공증편람도 펴내시는 등 협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대한공증협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 대한공증협회는 현재 임명공증인과 겸업공증인을 합하여 공증담당자가 2000여명에 이르는 국가업무를 처리하는 전국적인 조직이므로, 협회를 강제단체화하여 공증업무의 개선 및 통일, 공증업무담당자의 품위보전에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공증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공증의 질을 높이고 협회 차원의 홍보를 통하여 공증을 일반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의 감독업무도 일부 위임받아 지도감독업무도 처리하면서 자체 징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한공증협회는 공증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국내 공증의 선진화를 위하여 U.I.N.L 가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U.I.N.L은 세계 76개국에 가입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가 가입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세계 11위에 달하고 있는데 세계경제의

흐름에 발맞추고 세계 공증인들과의 어깨를 맞추기 위해서는 U.I.N.L 가입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하여 말씀 해주십시오.

A 전 세계적으로 공증인의 국제단체는 U.I.N.L이 유일합니다. U.I.N.L 가입국만 75개국입니다. 또한 비정부기구이지만 U.N.에서의 역할도 상당하며, 세계 경제 흐름과 아울러 공증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공증협회도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조속히 U.I.N.L에 가입하여 한국의 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일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포스티유 협약 등으로 공증인으로부터 받은 공증문서는 협약가입국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등 업무의 편리함이 증폭되고 있는 것처럼 협회가 세계적 단체인 U.I.N.L에 가입하여 세계의 흐름을 읽고 이를 국내 제도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라도 회원 가입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Q U.I.N.L에서는 한국 공증제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즉, 임명공증인의 임명과 임기제도라든지 협회의 임의단체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 해주십시오.

A U.I.N.L에서 한국 공증제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가입이 보류되었다고 하므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고 또한 오해한 부분은 설득하여 다음 번에는 가입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의 강제단체화가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체 징계라든지 하는 부분이 없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향후 징계권의 이관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증인의 독립성 부분은 임기제로 인하여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와 함께 U.I.N.L측에 사실상 임기제가 공증인의 독립성을 해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과거 공증인 임명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설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마지막으로 공증인에 대하여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증인이 되어 국민에게 공증업무를 통하여 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증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세워져 밝고 건강한 신뢰사회를 만드는 초석임을 공증인들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